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령 공포

설비공사 분리발주 허용

부실요인 해소 및 양질시공 정착 기대

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통과돼 6월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저가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설비전문업체들은 관련공사를 원도급에 의한 적정 가격에 수주받을 수 있어 각종 기계설비 공종에 대한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재무부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산회계법시행령중 개정령을 공포,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도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와 같이 건축공사 발주시 분리발주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공사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공아파트의 옥외설비공사와 설비

관련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만 건축에서 분리발주되고 나머지는 모두 건축에 포함되어 일괄발주 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의해 분리발주되도록 규정된 공사와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용이한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발주관서의 장이 공사의 성질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따라서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아 정밀시공이 요구되며 거주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하자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책임시공이 요구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발주자의 예산절감은 물론 그동안 원도급자의 불리한 저가하도급 계약과 공사대금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어 양질의 시공이 기대되며 원·하도급간의 각종 현장부조리등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설비전문업종의 기술개발과 국제시장

행정쇄신위원회 심의 확정통보 <'94. 5. 16>

기계설비공사의 분할발주(재무부)

코드번호 및 제출출처

002-2-0236 국민제안(대한설비공사협회)
202-2-0092 부산직할시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현재농경지정리 등 10종) 외에는 분할발주를 금지(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

(문제점)

- 구조설비가 포함된 건축공사도 분할발주가 금지되어 있어 건설업체가 대부분 전문건설업자인 기계설비업체에게 하도급하므로써 정밀시공 및 효과적인 품질관리 미흡

쇄신방안

- 정부가 발주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있어서 발주관서가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함.

필요조치 사항 및 추진일정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94. 5월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더욱 기대되고 있다.

기계설비공종은 전체 건축공사비중 아파트 15%, 일반건물 25%, 인텔리전트빌딩 40% 등 공사비 비율이 높은 편이나 원도급 업체인 일반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금액의 60~70% 규모의 저가에 하도급, 공사의 품질 유지 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현재 기계·설비공사 분야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내역서, 감리체계 등이 건축과 분리되어 있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따른 공정관리를 비롯 하자발생의 불·분명에 따른 현장의 분쟁요인이 극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적인 문제점은 충분히 조정·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발주자의 경우 원도급자가 이득을 보고 있는 원·하도급 간의 차액을 절감할 수

있고, 설비공사업자는 적정공사비에 의한 양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번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은 일석이조의 제도개선이라고 관련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설비공사 분리발주의 장점을 적극 권장하여 분리계약제도를 활용할 때, 발주자의 예산절감은 물론 건설시장 국제개방을 앞두고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공사 분리발주제도와 업계의 숙원 결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법령에 의한 경제활동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93년 3월 대한설비공사협회에서는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제도화 해 줄 것을 행정쇄신 과제로서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도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제도 시행을 행정쇄신위원회에 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3. 9. 1.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는 이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기계설비공사는 시공 및 하자의 구분이 명확하고 일반건설업계가 직접시공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설비업체에 분리발주 하되, 공사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입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행정쇄신 위원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재무부에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공사의 분할발주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93. 12. 30. 공포하였던바, 일반건설업계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건설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관련업계 및 학계, 건설부 기술부서 관계관의 합동 토론회를 갖고 심의 끝에 이의 절충안으로 분할계약 금지는 기본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공사, 즉

① 다른 법률에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된 공사(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에 적용)

② 공사의 규모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시공 함이 효율적인 공사(고속도로 지하철공사 등에 적용)

③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설비공사등에 적용)등 공사의 성질이나 시공여건을 기준으로 발주관서의 장이 판단, 분할발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한 것을 재무부에 제시하여 이 안대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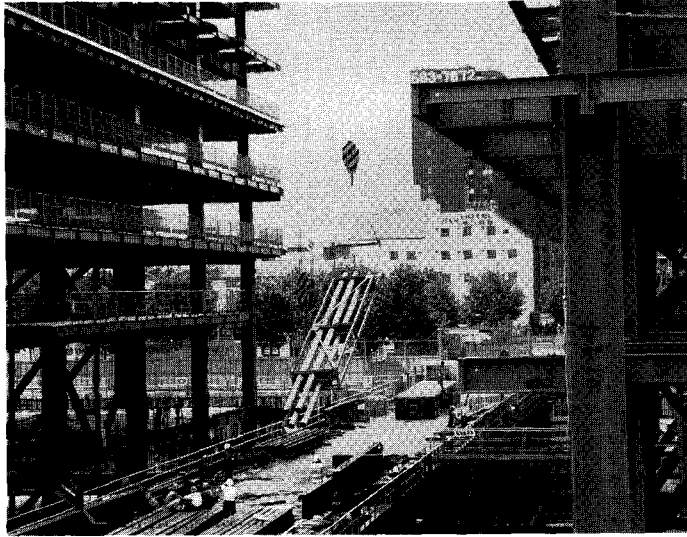
이와같은 분리발주제도 시행을 대한설비공사협회의 설립과 더불어 업계 숙원사업으로서 정부요로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각종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진정한 노력의 결실로서 부실시공 예방과 정부의 예산절감 및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사계약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대한설비공사협회 이동락 회장은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원하도급 간의 차액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부분에 추가 투입되는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수천억대의 자금이 부실시공방지에 투입되는 기대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락 회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허용함에 따라 설비시공자는 적정공사비의 확보로 설비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발주자는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 발주시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하여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체신부 조달사무소 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 계획 밝혀



분리발주

진흥과장 조현일

I 설비공사의 개요

1. 설비공사란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은 대지, 구조물, 설비로 분류되며 설비는 기계분야설비, 전기분야설비, 통신분야설비로 나뉘어진다.

이중 기계분야설비는 건설업법에는 설비공사로 명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기, 통신설비와 구분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라고 통칭한다.

이러한 설비(기계분야)는 과거에는 단순히 화장실공사와 난방공사만을 의미하였으나, 사회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선진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는 단순한 주거기능에서 쾌적한 실내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청정도를 인체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

고 또한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됨에 따라 엘리베이터, 덤웨이터등의 운송장치가 건물내에 설치되었으며, 이런 건물내의 설비를 자동화하여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이 건축물이 인텔리전트화[주기]됨에 따라 건축물내의 설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기계설비를 크게 분류하면

공기조화 및 냉·난방설비 : 실내공기의 온도, 습도, 오염도를 조절하여 인체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는 설비

난방설비 : 실내온도를 높여주고 조절하는 설비

위생설비 : 화장실 설비

급·배수설비 : 주거인에 온수·냉수를 공급하고 오수, 잡수를 배수하는 설비

정화조 설비 : 오염된 배수를 정화하는 설비

운송설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문서이송장치등

자동제어설비 : 기계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

주방설비 : 주방기기등

가스설비 : 가스(도시가스등)를 공급하는 설비등

플랜트설비 : 발전소, 공장, 석유화학단지등의 설비등

냉동·냉장설비 : 냉동·냉장 창고, 농·어축산물의 판매설비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파트의 경우를 일례로 들면

난방설비 : 방의 난방용 배관, 보일러등

운송설비 : 엘리베이터 등

위생설비 : 화장실의 수도꼭지, 샤워, 세면대, 양변기, 욕조등

급수설비 : 온수, 냉수를 공급하는 배관, 욕상 물탱크, 온수탱크등

배수설비 : 주방용, 세면용, 양변기용 배수

배관 등

가스설비 : 난방용, 주방용 가스배관, 가스누설차단기, 가스경보기 등

주방설비 : 가정용 주방가구 및 싱크대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기 1]

건축물의 인텔리전트화 : 건축물내에 온도, 습도, 청정도등을 유지하는 기존설비에 정보통신시스템(TC), 지역통신망(LAN)을 중심으로 사무자동화(OA), 각종보안시스템 및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고도 정보화 사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 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를 의미함.

2. 설비공사의 중요성

위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설비중에 어느한 곳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대단한 불편을 느끼게 된다.

이밖에도 설비는 공사비의 구성, 설비수명의 라이프 사이클, 에너지 소비량 등으로 볼때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양질의 설비야말로 작업인의 쾌적,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거주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능률의 향상을 가져온다.

설비의 중요성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사금액의 대형화

총 공사금액 대비 구성비는 대략적으로 아파트 : 12-15%, 일반건축물 : 20%, 고급건축물 : 25-30%, 인텔리전트 빌딩 : 30-40%

2) 시공공종의 전문화

기계설비는 장비설치, 배관, 용접, 닥트제작·설치, 보온, 기계기구 부착, 자동제어, 운송설비설치, 가스배관등의 시공이 전문화되어 있고 시공자재 또한 다양하고 신자재, 신공법이 나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시공분야가 특화되어

있다.

3) 설계의 전문화

학문체계가 기술체계가 건축과는 다르므로 설비설계는 과기처 등록 전문설계용역 기술사에 의하여 설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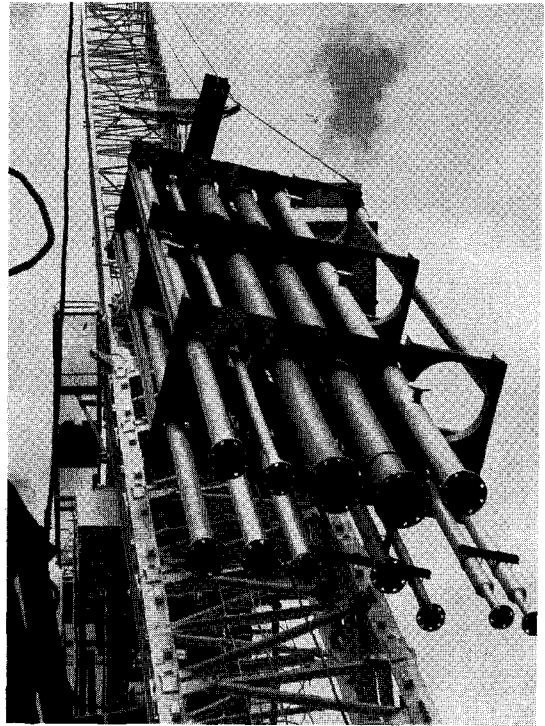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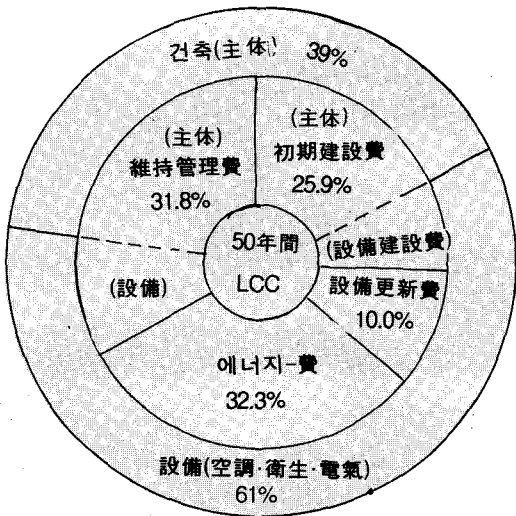
4) 설비수명 라이프 사이클

설비는 타 건축공종과는 달리 에너지에 의하여 항상 살아 움직이므로 라이프사이클이 건축구조물(라이프 사이클 50년)에 비해 짧다(10-15년).

설비 라이프사이클 연장을 위하여는 성실 시공이 반드시 뒷 받침 되어야만 한다.

참고로 설비수명 라이프 코스트에 대한 일본의 분석자료를 인용하면 그림과 같다.

설비의 LIFE CYCLE COST



을 일괄해서 건설회사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건설회사는 설비를 설비전문회사에 하청을 주어서 시공한다. 분리발주방식은 건축주가 설비를 건축물에서 분리하여 각각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설비분야는 원청에 의해서 시공된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괄발주방식	분리발주방식
공사전체관리	건축시공회사	건축주,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설비회사의 위치	하청	원도급
설비시공의 1차 책임소재	건축시공회사	설비시공회사
건축주와의 설비분야 커뮤니케이션	건축시공회사	설비시공회사

II. 설비공사의 시공 계약 제도 분석

1. 건설공사의 계약제도

건설공사의 계약제도를 원·하청간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일괄발주방식, 분리발주방식으로 크게 분류된다.

일괄발주방식은 건축주가 설비와 건축물

2. 기계설비공사 계약제도와 시공상태 분석

1) 일괄발주방식

[현행 계약제도]

아래표는 기계설비공사의 한 예를 분석한 것으로 현장여건, 공사여건에 따라 투입예산은 변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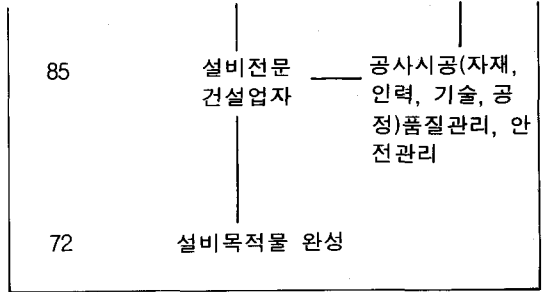
(투입예산)	(시공형태)	(업무체계)
100	발주자	공사관리감독
94	일반건설업자	하도급 관리
70	설비전문 건설업자	공사시공, (자재, 인력, 기술, 공 정) 품질관리
59	설비목적물 완성	

설비는 시공의 전문성, 학술체계의 상이성, 시공관리의 난이성, 소요자재의 다양성(약 20,000개)으로 인하여 건설회사의 직영시공이 어려우며 대개 하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발주자가 100의 예산을 투입하였을 경우 제품(건축설비)에 투입되는 실소요금액은 59(추정치)에 불과한 것이 현행 계약제도 아래에서의 설비공사의 하도급 실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생방식은 소비자의 원가부담에 비해 설비의 질이 떨어지며 부실시공과 하자발생 원인을 제공한다.

2) 분리발주방식

투입예산의 분석은 ○○기관에 분리발주한 낙찰금액의 평균과 시공금액의 평균을 분석한 것임

(투입예산)	(시공형태)	(업무체계)
100	발주자	공사관리감독



설비전문업체는 설비만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이며 따라서 설비분야에서는 일반건설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

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설비업체는 원·하도급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 따라 예정가격의 85%에 낙찰이 가능하다.

설비목적물에 투입되는 직접비는 설비회사의 일반관리비등을 뺀 72(예정가격을 100으로 한 경우)가 투입되며 따라서 소비자(건축주)는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양질의 설비를 획득할 수 있다.

III. 분리발주 사유

1. 예산절감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일반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비용(대략 공사비의 15-30%)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건축공사보다 발주시기를 늦출 수 있으므로 발주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물가연동제 적용시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총 공사금액 100억인 경우의 건물로서 설비가 공사비의 30%인 경우를 예로들면 설비금액은 약 30억원이며 발주자는 이중 15%인 4.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2. 양질의 설비제공

설비공사는 부실시공할 경우 소비자의 단선민원은 물론이고 부실에 따른 하자보수비

용, 에너지 낭비등의 운전경비 증가, 설비라이프사이클 단축에 따른 유지비 및 개보수비증가등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설비공사는 단순히 법정기간내의 하자방지 뿐만아니라 설비 라이프사이클 기간동안의 하자방지, 개보수시 재 시공까지 고려한 양질의 시공을 하여야 한다.

양질의 시공은 적정공사비의 확보와 건축주와의 긴밀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선진계약제도 도입

일부 농수산물이 생산자 공급가에 비해 소비자 구매가가 비 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설비공사도 발주시 분리발주함으로써 발주자는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설비공사를 분리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설비공사 분리 발주 추세

일본	: 100%
네델란드	: 100%
독일DUSSEL	: 95%
영국 DLE	: 75%
영국 DOE	: 90%

[주기] 일본의 경우, 건설업법개정에 대한 국회심의에서“설비공사는 전문시공 업자에게 분리발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결의가 있었으며 또한, 중앙건설업심의회에서 건설부장관에게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4. 건설관련부조리 제거

일반적으로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설비공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사수주의 연속성

보장 결여와 공사현장의 지역성등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의 수주형태가 설비업체의 시공 능력보다는 원도급자의 자의적 조건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 건설한 일반건설업체(하도급 계열화가 완전히 정착된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체의 일방적 횡포와 건설관련의 민원이 그치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현실 때문이다.

5. 중소기업보호

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일반건설업체보다 자본금등이 영세한 설비업체와 직접 계약함으로써 하도급계약시 발생하는 원·하도급간의 차액이 설비업체에게로 이전되므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부합된다.

6. 기술·시공의 전문화

설비는 학문적 기술체계가 건축과는 다르므로 기술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건축설비,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 건설기계의 관련 기술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으며, 설계분야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06호)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설비설계는 관련 기술사가 설계하도록 고시되어 있다.

공사시방서도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가 건축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사원가가계산분야에서도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다.

7. 소비자 보호

기계설비가 근대화, 고도화되고 그 기능이 진보함에 따라 편리성과 쾌적성도 향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성과 유지관리의 세심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의 보급증대와 더불어 교통사고나 공해의 증대에 유사한 관계가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이토록 중요한 기계설비는 계약행정의 발전과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설비공사 분리발주

건축공사분류

공사명	업종별	면허체계	학문체계	관련업법	발주형태	설계체계	관리체계	에너지 사용유형
건축 공사	가설공사	비계공사	건축공학	건설업법	일반건설업 면허소지자 에게 발주	건축사	건축직기술자	없음
	토공사 및 기초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조적공사						
	타일 및 석공사	미장·방수공사						
	방수 및 미장공사	"						
	지붕 및 벽판넬공사	지붕판금공사						
	금속공사	철물공사						
	창호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						
	도장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의장공사							
잡공사	없음							
운반공사	"							
설비 공사	기계설비공사	설비공사업	기계공학	건설업법	건축공사와 통합발주	과기처	기계직기술자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전기에너지
	전기설비공사	전기공사업	전기공학	전기공사업법	통합발주	등록기술사	전기직기술자	
	통신설비공사	통신공사업	기계공학	통신공사업법	분리발주	"	전기직기술자	
	방재설비공사	소방공사업	기계·전기 공학	소방법	"	"	기계직기술자 전기직 "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에너지 절약

기계설비는 타 건축공종과 달리 에너지를 항상 소비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는 설비이므로 에너지의 절약을 위한 정밀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계설비는 배관, 닥트의 공장화, 새로운 단열재의 도입, 에너지 절약기기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압장서고 있다.

IV. 설비공사 분리발주 검토

1. 계약제도 검토

1) 예산회계법

금번 대통령령 제14,295호(1994. 6. 30)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설비공사를 건축공사에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 단서

3항의 신설사유는 우리협회와 부산직할시가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안(제안시기는 서로 달랐음) 한 기계설비공사의 분할발주가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주기]되어 정부방침으로 결정되었고, 관계부처인 재무부가 정부방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감안하여 설비공사를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토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관리체계, 시공체계가 건축공사와 분리되어 공정관리 및 하자책임구분등에 문제점이 없는 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공사의 품질향상과 발주처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정부부처 및 정부유관기관에서도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2) 하자관리

일부에서는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구분의 불분명으로 인한 하자 보수가 곤란하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분리발주 시공시에는

@ 시공 및 하자에 대하여 설비업자는 1차적 책임을 지며(하도급시에는 2차적 책임)

@ 하도급 공사시 원청자의 지급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원청자, 하청자간의 하자 구분의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요인이 제거되고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제도로 인한 제도적 뒷받침이 보장되며 분리되어 있어 시공의 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하자발생시 하자구분이 용이하고 신속한 하자처리가 가능하므로 설비공사 분리발주는 하자관계로 인한 지장은 없다.

기술검토에서 이미 서술한 공정관리상의 문제점과 하자관리의 문제점은 발주관서에서 감리제도, 설계서 검토, 공정회의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문제는 없으며, 설비공사중 타법(환경관련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 규정된 공사가 포함되더라도 기존 건축공사의 발주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사가 포함된 설비공사는 설비공사업면허업체로서 소방설비공사업면허를 겸업한 업체로 자격제한 할 수 있으며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면허보완 공동 도급할 수 있다.

또한 내역서 작성시 건축공사와 일괄발주할 경우와는 달리 가설사무실, 가설창고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옷마춤에 비유하면 양복을 맞출때 넥타이를 양복점에서 같이 맞출것인가, 아니면 넥타이 전문점에서 별도로 살 것인가와 같다.

이와같이 건설공사중 설비공사도 그 특성을 고려, 소비자(발주자)가 건축공사에 설비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한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발주한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예산회계법령에서 건축공사에 항상 포함하여 발주토록 규정되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었으나,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발주자)는 공사발주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많다. 이제 발주관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 설비공사의 특성을 고려,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면 된다.